

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6 선고 2021나573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6 선고 2021나57352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4. 7 선고 2019가단7838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1. B

2. C

변론 종결2021. 11. 5.

판결 선고2021. 11. 26.

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4. 7. 선고 2019가단78385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B와 D 사이에 2018. 4. 2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C와 D 사이에 2019. 5. 1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, D에게, 피고 B는 2018. 4. 25. 이 법원 접수 제173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, 피고 C은 2019. 5. 16. 이 법원 접수 제196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채승원

판사박주영

판사김수양